

##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 2018. 8. 9 조례 제1834호  
일부개정 2021. 6. 30 조례 제214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2. 12. 30 조례 제236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4. 2. 28 조례 제249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2. 28>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. 2. 28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에 의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<신설 2024. 2. 28>

제3조 삭제 <2024. 2. 28>

제4조 삭제 <2024. 2. 28>

제5조 삭제 <2024. 2. 28>

제6조 삭제 <2024. 2. 28>

제7조 삭제 <2024. 2. 28>

제8조 삭제 <2024. 2. 28>

제9조 삭제 <2024. 2. 28>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의한 처분·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및 제70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”로 하고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”를 “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수립 및 정기공시”를 “수립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1. 6. 30 조례 제214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2. 12. 30 조례 제236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교육문화국장”을 “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24. 2. 28 조례 제249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